2021-2022 BCO AMENDMENTS SENT DOWN TO PRESBYTERIES BY THE 48th GENERAL ASSEMBLY FOR VOTING, and for ADVICE AND CONSENT

2021-2022 제 48 차 총회에서 각 노회로 내려 보내어 투표, 조언 및 동의를 구하는 헌법 수정안

2021-2022 BCO AMENDMENTS SENT DOWN TO PRESBYTERIES BY THE 48th GENERAL ASSEMBLY FOR VOTING, and for ADVICE AND CONSENT

<u>ITEM 1</u>: Amend *BCO* 12-6 and 13-4 to allow Presbyteries and Sessions to establish rules for holding virtual meetings. (New wording underlined.)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u>as amended</u> **Overture 26** from Philadelphia Metro West Presbytery. The Overtures Committee had amended the overture by striking the originally proposed addition to *BCO* 10-7 and by adding the following language to *BCO* 12-6 and 13-4:

- **12-6.** The Session shall hold stated meetings at least quarterly. Moreover, the pastor has power to convene the Session when he may judge it requisite; and he shall always convene it when requested to do so by any two of the ruling elders. When there is no pastor, it may be convened by two ruling elders. The Session shall also convene when directed so to do by the Presbytery. The Session, in its discretion, may for itself and its subordinate committees, commissions, adopt rules determining when videoconference or telecommunication arrangements may be used for meetings and regulating how meetings using telecommunications arrangements shall be conducted.
- **13-4.** Any three ministers belonging to the Presbytery, together with at least three ruling elders, being met at the time and place appointed (which may include a teleconference or videoconference place), shall be a quorum competent to proceed to business. The Presbytery, in its discretion, may for itself and its subordinate committees, commissions, adopt rules determining when videoconference or telecommunication arrangements may be used for meetings and regulating how meetings using telecommunications arrangements shall be conducted.

Grounds: The original Overture proposed a complex series of regulations for the holding of a completely "virtual" General Assembly, as well as virtual Presbytery meetings.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has not yet been able to study and report to the Assembly its opinion as to what would be required or most helpful in order to hold a virtual General Assembly. The amended version allows Presbyteries and Sessions the liberty to establish rules for holding virtual meetings. It will allow that needed flexibility while giving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n opportunity to study the issue of a virtual General Assembly.

2021-2022

제 48 차 총회에서 각 노회로 내려 보내어 투표, 조언 및 동의를 구하는 헌법 수정안

1 번 항: 헌법 12-6 과 13-4 는 노회들과 당회들이 가상 회의들을 주최하기 위한 규칙들을 수립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수정한다.** (새 말들은 밑줄을 쳤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필라델피아 메트로 웨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26** 에 <u>수정된대로</u>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원래 상정된 *헌법* 10-7 에 추가를 삭제하고, *헌법* 12-6 과 13-4 에 다음의 말을 추가하여 헌의안을 수정했다.]

- 12-6. 당회는 적어도 사분기로 정기 회의를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는 당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담임목사는 치리장로 중 누구든 두명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항상 이를 소집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당회는 치리장로 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당회는 또한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소집되어야 한다. 당회는 재량으로 당회 자체와 종속 위원회들, 전권위원회들을 위해, 화상회의 혹은 전산 소통의 배정이 언제 회의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고 전산 소통의 배정을 사용하는 회의들이 어떻게 실시되도록 규제하는 규칙들을 채택할 수 있다.
- 13-4. 노회에 속한 목사 3 명과 적어도 치리장로 3 명 이상이, 지정된 시간과 (전산회의 혹 화상회의 장소를 포함하는) 장소에 모이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성수를 이룬다. 당회는 재량으로 당회 자체와 종속 위원회들, 전권위원회들을 위해, 화상회의 혹은 전산 소통의 배정이 언제 회의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하고 전산 소통의 배정을 사용하는 회의들이 어떻게 실시되도록 규제하는 규칙들을 채택할 수 있다.

근거: 원래 헌의안은 가상 노회 회의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가상" 총회를 주최하기 위한 일련의 복잡한 규제들을 상정했다. 행정위원회는 가상 총회를 주최하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될 것인지 혹을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의견을 연구할 수 없었고 또 총회에 보고 할 수 없었다. 수정판은 노회들과 당회들이 가상 회의들을 주최할 수 있는 규칙들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 그것은 행정위원회가 가상 총회에 대한 논제를 연구할 기회를 주는 반면 그것이 필요로 한 유연성을 허용할 것이다.

<u>ITEM 2</u>: Amend *BCO* 16 by adding a clause (16-4) that prohibits ordination of men who self-identify as "gay Christians," "same sex attracted Christians," "homosexual Christians," "or like terms." (New wording underlined.)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u>as amended</u> **Overture 23** from Gulf Coast Presbytery. The Overtures Committee had amended the overture by striking the originally proposed addition to *BCO* 17 and by adding a new clause (16-4) to *BCO* 16:

16-4. Offic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must be above reproach in their walk and Christlike in their character. Those who profess an identity (such as, but not limited to, "gay Christian," "same sex attracted Christian," "homosexual Christian," or like terms) that undermines or contradicts their identity as new creations in Christ, either by denying the sinfulness of fallen desir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same sex attraction), or by denying the reality and hope of progressive sanctification, or by failing to pursue Spirit-empowered victory over their sinful temptations, inclinations, and actions are not qualified for ordained office.

<u>ITEM 3:</u> Amend *BCO* 20-4, 24-3, and 24-4 regarding election of pastor, associate pastor, and officers. (New wording underlined.)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u>as amended</u> **Overture 5** from Calvary Presbytery. The Overtures Committee had amended the original proposals by adding the parenthetical phrase "(excluding blanks and abstentions)" to each section.]

Amend BCO 20-4 as follows:

20-4. Method of voting: The voters being convened, and prayer for divine guidance having been offered, the moderator shall put the question:

Are you ready to proceed to the election of a pastor?

If they declare themselves ready, the moderator shall call for nominations, or the election may proceed by ballot without nominations. In every case a majority of all the voters present votes cast (excluding blanks and abstentions) shall be required to elect.

Amend BCO 24-3 as follows:

24-3. All communing members in good and regular standing, but no others, are entitled to vote in the election of church officers in the churches to which they respectively belong. A majority of those present votes cast (excluding blanks and abstentions) is required for election.

2 번 항: 헌법 16 은 스스로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들," "같은 성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들," "남색하는 그리스도인들," "혹 그와 같은 말들로" 정체성을 밝힌 남자들의 안수를 금하는 절 (16-4)를 추가하여 수정한다. (새 말들은 밑줄을 쳤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걸프 코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23** 에 <u>수정된대로</u>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원래 상정된 *헌법* 17 에 추가를 삭제하고, *헌법* 16 에 새 구절 (16-4)를 추가하여 헌의안을 수정했다.]

16-4. 미국장로교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품행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동성에 이끌리는) 타락한 욕망들의 죄성을 부정하거나, 점진적 성화의 실체와 희망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악된 유혹들과 성향들과 행위들에 대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 할 것을 추구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그에 상충하는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동성애자 그리스도인," "동성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 "남색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와 같은 말들로)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안수 직분에 자격이 없다.

<u>3 번 항</u>: *헌법* 20-4, 24-3 과 24-4 는 목사, 부목사 및 직분자들의 선출에 관한 것으로 **수정한다**. (새 말들은 밑줄을 쳤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갈보리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5** 에 <u>수정된대로</u>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원래 상정안들을 "(빈 칸들과 기권들을 제외하고)" 각 항에 괄호안의 절을 추가하여 수정했다.]

헌법 20-4 의 수정은 다음과 같다:

20-4. 투표 방법: 투표자들이 소집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귀하들은 담임목사 선출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일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하면, 사회자는 공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공천 없이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선거는 (빈 칸들과 기권들을 제외하고) 전체 출석 투표자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헌법 24-3 의 수정은 다음과 같다:

24-3. 예외 없이, 오직 무흠 수찬 교인들에게만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교회 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선출은 (빈 칸들과 기권들을 제외하고) 전체 출석 투표자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ITEM 3, continued

Amend **BCO** 24-4 as follows:

24-4. The voters being convened, the moderator shall explain the purpose of the meeting and then put the question:

Are you now ready to proceed to the election of additional ruling elders (or deacons) from the slate presented?

If they declare themselves ready, the election may proceed by private ballot without nomination. In every case a majority of all the voters present votes cast (excluding blanks and abstentions) shall be required to elect.

<u>ITEM 4:</u> Amend *BCO* 21-4; 24-1 (Overture 37) clarifying moral requirements for church office (Note: Overtures 16 and 30 were answered with reference to Overture 37.)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u>as amended</u> **Overture 37** from Eastern Pennsylvania Presbytery. The Overtures Committee had amended the original proposals by removing from both added paragraphs the parenthetical phrase "(e.g., homosexual desires, etc.)" after the words "...<u>he must not be known by reputation or self-profession according to his remaining sinfulness."</u>

Amend *BCO* **21-4** to add a new sub-paragraph 21-4.e, as follows, with the subsequent sub-paragraphs [21-4.e-h] re-lettered [to be 21-4.f-i]:

BCO 21-4

e. In the examination of the candidate's personal character, the presbytery shall give specific attention to potentially notorious concer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relational sins, sexual immorality (including homosexuality, child sexual abuse, fornication, and pornography), addictions, abusive behavior, racism, and financial mismanagement. Careful attention must be given to his practical struggle against sinful actions, as well as to persistent sinful desires. The candidate must give clear testimony of reliance upon his union with Christ and the benefits thereof by the Holy Spirit, depending on this work of grace to make progress over sin (Psalm 103:2-5, Romans 8:29) and to bear fruit (Psalm 1:3; Gal. 5:22-23). While imperfection will remain, he must not be known by reputation or self-profession according to his remaining sinfulness, but rather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hrist Jesus (1 Cor. 6:9-11). In order to maintain discretion and protect the honor of the pastoral office, Presbyteries are encouraged to appoint a committee to conduct detailed examinations of these matters and to give prayerful support to candidates.

3 번 항, 계속

헌법 24-4 의 수정은 다음과 같다:

24-4. 공동의회가 개회되면, 의장이 회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묻는다:

이제 여러분은 제출된 명단 중에서 추가로 치리장로(또는 집사)를 선출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회중이 준비되었다고 대답하면, 공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어떤 경우든 선거는 <u>(빈 칸들과 기권들을 제외하고)</u> 전체 출석 투표자 <u>투표수의</u> 과반수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u>4 번 항:</u> *헌법* 21-4, 24-1(헌의안 37)은 교회 직분을 위해 도덕적 요구들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새 말들은 밑줄을 쳤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이스턴 펜실베니아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37** 에 <u>수정된대로</u>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원래 상정안들을 추가된 두 문단들 모두에서 "… <u>그는</u> <u>결코 그의 남아 있는 죄를 따른 평판이나 자기 고백에 의해서 알려져서는 안된다.</u>"라는 말들 후에 나오는 괄호 안의 구절 "(예, 동성애적 욕망들, 등.)"을 삭제함으로 수정했다.]

헌법 21-4 는새 종속 문단 21-4.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수정한다.** 계속되는 종속 문단들 [21-4.ㅁ-ㅇ]는 [21-4.ㅂ-ㅈ]가 되도록 글자를 다시 고쳤다.]

헌법 21-4.

□. 후보자의 개인적 성품의 시취에서, 노회는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관계적 죄들, (동성애, 어린이 성적 학대, 음행과 춘화를 포함하는) 성적 부도덕, 중독들, 학대 행위, 인종 차별주의 및 잘 못된 재정관리와 같은 잠재적으로 악명을 끼칠 우려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해야만한다. 집요한 죄의 욕망들에 뿐만 아니라, 죄의 행위들을 저항하는 그의실제적인 몸부림에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는 반드시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의존과 성령에 의해 그것으로 말미암는혜택들, 이 은혜의 사역에 의지하여 죄를 극복하는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시편 103:2-5, 로마서 8:29)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시편 1:3; 갈. 5:22-23)에 대한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불완전함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는 결코그의 남아 있는 죄를 따른 평판이나 자기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알려져야만 한다 (고전 6:9-11). 분별력을 유지하며 목회 직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회들은이런 사안들의 자세한 조사를 시행하고 후보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위원회를임명 할 것을 권장한다.

ITEM 4, continued

Amend *BCO* **24-1** by the addition of a second paragraph (addition underlined):

24-1. Every church shall elect persons to the office of ruling elders and deacon in the following manner: At such times as determined by the Session, communicant members of the congregation may submit names to the Session, keeping in mind that each prospective officer should be an active male member who meets the qualifications set forth in 1 Timothy 3 and Titus 1. After the close of the nomination period nominees for the office of ruling elder and/or deacon shall receive instruction in the qualifications and work of the office. Each nominee shall then be examined in:

- a. his Christian experience, especially his personal character and family management (based on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1-7 and Titus 1:6-9),
- b. his knowledge of Bible content,
- c. his knowledge of the system of doctrine, government, discipline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BCO* Preface III, The Constitution Defined),
- d. the duties of the office to which he has been nominated, and
- e. his willingness to give assent to the questions required for ordination (BCO 24-6).

In the examination of each nominee's personal character, the Session shall give specific attention to potentially notorious concer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relational sins, sexual immorality (including homosexuality, child sexual abuse, fornication, and pornography), addictions, abusive behavior, racism, and financial mismanagement. Careful attention must be given to his practical struggle against sinful actions, as well as to persistent sinful desires. Each nominee must give clear testimony of reliance upon his union with Christ and the benefits thereof by the Holy Spirit, depending upon this work of grace to make progress over sin (Psalm 103:2-5; Romans 8:29) and to bear fruit (Psalm 1:3; Gal. 5:22-23). While imperfection will remain, he must not be known by reputation or self-profession according to his remaining sinfulness, but rather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hrist Jesus (1 Cor. 6:9-11). In order to maintain discretion and protect the honor of church office, Sessions are encouraged to appoint a committee to conduct detailed examinations into these matters and to give prayerful support to nominees.

If there are candidates eligible for the election, the Session shall report to the congregation those eligible, giving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a congregational meeting for the elections.

If one-fourth (1/4) of the persons entitled to vote shall at any time request the Session to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for the purpose of electing additional officer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ssion to call such a meeting on the above procedure. The number of officers to be elect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gregation after hearing the Session's recommendation.

4 번 항, 계속

헌법 24-1의 수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24-1 은 두 번째 문단을 추가함으로 **수정한다.** (추가 문단에 밑줄을 쳤다.)

24-1. 모든 교회가 치리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회가 선거일을 정하면, 회중의 수찬교인들은 당회 앞으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단 예상되는 후보자는 디모데전서 3 장과 디도서 1 장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무흠 남자 수찬교인이어야 한다. 공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치리장로와/ 또는 집사 직분자로 공천 받은 사람들은 직분의 자격과 사역에 대한 교육을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천 받은 각 사람은 다음 분야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 □.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경험, 특별히 그의 인격적 성품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디모데 전서 3:1-7과 디도서 1:6-9에 명시된 자격에 기초하여).
- ㄴ. 성경 내용에 관한 지식
- 다. 미국장로교 헌법(*헌법*서문 Ⅲ, 헌법의 정의)에 내포된 교리체계, 교회 정치, 권징 조례에 대한 지식,
- ㄹ. 공천 받은 직분의 의무
- 口. 안수를 위한 질문에 동의할 의사 (헌법 24-6).

공천된 자 각각의 개인적 성품의 시취에서, 당회는 다음과 같은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 관계적 죄들, (동성애, 어린이 성적 학대, 음행과 춘화를 포함하는) 성적 부도덕, 중독들, 학대 행위, 인종 차별주의 및 잘 못된 재정 관리와 같은 잠재적으로 악명을 끼칠 우려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해야만 한다. 집요한 죄의 욕망들에 뿐만 아니라, 죄의 행위들을 저항하는 그의 실제적인 몸부림에도 반드시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한다. 공천된 자 각각은 반드시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의존과 성령에 의해 그것으로 말미암는 혜택들, 이 은혜의 사역에 의지하여 죄를 극복하는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시편 103:2-5, 로마서 8:29)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시편 1:3; 갈. 5:22-23)에 대한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불완전함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는 결코 그의 남아 있는 죄를 따른 평판이나 자기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알려져야만 한다 (고전 6:9-11). 분별력을 유지하며 교회 직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회들은 이런 사안들의 자세한 조사를 시행하고 후보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위원회를 임명 할 것을 권장한다.

만일 피선 가능한 후보자가 있으면, 당회는 그 가능한 후보자를 회중 앞에 알려야 하며,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의 시간과 장소를 적어도 삼십(30) 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만일 어느 때든지 투표권자 사분의 일(1/4)이 추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목적으로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하면, 당회는 상기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피선될 직원의 수는 당회의 추천을 들은 후 회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ITEM 5: Amend *BCO* 22-2 regarding process for Assistant to Associate Pastor.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s amended **Overture 31** from Northwest Georgia Presbytery. The Overtures Committee had removed the phrase "who has provided satisfactory service for one-year in this congregation," after the words "An existing assistant pastor."

Amend *BCO* **22-2** by the addition of a new second sentence as follows:

22-2. The pastor and associate pastor are elected by the congregation using the form of call in *BCO* 20-6. An existing assistant pastor may be elected by the congregation as an associate pastor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Session without the election of a pulpit committee. Being elected by the congregation they become members of the Session.

<u>ITEM 6:</u> Amend *BCO* 24-1 to clarify that a session has discretion on the timing of some parts of the exam of officer nominees.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s amended **Overture 18** from Pacific Northwest Presbytery, giving Sessions discretion on the timing of some parts of the exam of officer nominees. The Overtures Committee had amended the original proposal by removing from the first paragraph the phrase "After the close of the nomination period" and adding to the an introductory phrase "Notwithstanding the above," to the new second paragraph.] (Note: Overture 6 was answered by reference to Overture 18.)

Amend *BCO* **24-**1, first paragraph, by the deletion of the introductory phrase in sentence three and one word ("then") in the last sentence, and by the addition of one sentence after 24-1.e, as follows (addition underlined):

BCO 24-1. Every church shall elect persons to the offices of ruling elder and deacon in the following manner: At such times as determined by the Session, communicant members of the congregation may submit names to the Session, keeping in mind that each prospective officer should be an active male member who meets the qualifications set forth in 1 Timothy 3 and Titus. After the close of the nomination period, nNominees for the office of ruling elder and/or deacon shall receive instruction in the qualifications and work of the office. Each nominee shall then be examined in:

- a. his Christian experience, especially his personal character and family management (based on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1-7 and Titus 1:6-9),
- b. his knowledge of Bible content,
- c. his knowledge of the system of doctrine, government, discipline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BCO* Preface III, The Constitution Defined),

5번 항: 헌법 22-2는 보조 목사가 부목사가 되기 위한 진행 절차에 관한 것으로 수정한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노스웨스트 죠지아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31** 에 <u>수정된대로</u>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기존의 보조 목사"라는 말 후에 나오는 "이 회중에서 일년 동안 만족할 봉사를 제공한 자"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헌법 22-2는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새 문장을추가하여 수정한다:

22-2.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교회헌법 20-6 의 청빙 방법에 의해 회중이 선출한다. 기존 보조 목사는 청빙위원회의 선출 없이 당회의 추전으로 회중에 의해 부목사로 선출될 수 있다. 그 회중의 선출로 그들은 당회원이 된다.

6 번 항: 헌법 24-1 은 당회가 직분자로 공천된 자들의 시취의 어떤 부분들의 시점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수정한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퍼시픽 노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당회들에게 직분자로 공천된 자들의 시취의 어떤 부분들의 시점에 관해 재량권을 주도록 한 **헌의안 18** 에 <u>수정된대로</u>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원래의 상정안을 첫 번째 문단에서 "공천 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두번째 새 문단에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라는 도입 구절을 하나 추가 하여 수정했다.]

(참조: 헌의안 6 는 헌의안 18 에 관련하여 응답되었다.)

헌법 24-1 은,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에 있는 도입 구절과 끝 문장에 있는 한 낱말 ("그리고")를 지우고, 24-1.ㅁ. 후에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수정한다**: (추가 문단에 밑줄을 쳤다.)

- 24-1. 모든 교회가 치리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회가 선거일을 정하면, 회중의 수찬교인들은 당회 앞으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단 예상되는 후보자는 디모데전서 3 장과 디도서 1 장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한 무흠 남자 수찬교인이어야 한다. 공천 기간이 종료된 후에 치리장로와/또는 집사 직분자로 공천 받은 사람들은 직분의 자격과 사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천 받은 각 사람은 다음 분야의 시취를 받아야 한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경험, 특별히 그의 인격적 성품과 가정을 다스리는 일 (디모데 전서 3:1-7 과 디도서 1:6-9 에 명시된 자격에 기초하여),
 - ㄴ. 성경 내용에 관한 지식
 - □국장로교 헌법(헌법 서문 III, 헌법의 정의)에 내포된 교리체계, 교회 정치, 권징 조례에 대한 지식,

ITEM 6, continued

- d. the duties of the office to which he has been nominated, and
- e. his willingness to give assent to the questions required for ordination. (BCO 24-6)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Session may render a decision on Christian experience at any point in the process, and based on that decision, may judge him ineligible for that election.

If there are candidates eligible for the election, the Session shall report to the congregation those eligible, giving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a congregational meeting for elections.

If one-fourth (1/4) of the persons entitled to vote shall at any time request the Session to call a congregational meeting for the purpose of electing additional officer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ssion to call such a meeting on the above procedure. The number of officers to be elect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gregation after hearing the Session's recommendation.

<u>ITEM 7:</u> Amend *BCO* 32-20 regarding time considerations for offenses, by deleting the current paragraph (32-20) and substituting the following paragraph.

[Note: the 48th GA answered **Overture 22** in the affirmative as amended. The OC had amended the overture's substitute paragraph by deleting its first sentence as well as the first word of the second sentence.]

Amend *BCO* **32-20** by deleting the current paragraph 32-20 and substituting the following:

32-20. The accused or a member of the court may object to the consideration of a charge, for example, if he thinks the passage of time since the alleged offense makes fair adjudication unachievable. The court should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gravity of the alleged offense as well as what degradations of evidence and memory may have occurred in the intervening period.

ITEM 8: Amend *BCO* 38-1 regarding confession document for case without process.

[Note: the 48th GA answered in the affirmative **Overture 33** from Pacific Northwest Presbytery, regarding a Confession Document for a case without process.]

Amend *BCO* **38-1** be amended as follows. (Strike-through for deletions, underlining for new wording.)

38-1. When any person shall come forward and make his offense known to the court, a full statement of the facts shall be recorded and judgment rendered without process. In handling a confession of guilt, it is essential that the person intends to confess and permit the court to render judgment without process. Statements made

6 번 항, 계속

ㄹ. 공천 받은 직분의 의무

口. 안수를 위한 질문에 동의할 의사 (헌법 24-6).

<u>상기</u>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진행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든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에 근거하여, 그가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일 피선 가능한 후보자가 있으면, 당회는 그 가능한 후보자를 회중 앞에 알려야 하며,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의 시간과 장소를 적어도 삼십(30) 일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만일 어느 때든지 투표권자 사분의 일(1/4)이 추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목적으로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하면, 당회는 상기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피선될 직원의 수는 당회의 추천을 들은 후 회중에 의해서 결정된다.

<u>7 번 항:</u> *헌법* 32-20 은 범행들에 대한 시간적 고려들에 관한 것인데, 현재의 문단 (32-20)을 지우고 다음 문단을 대체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헌의안 22** 에 수정된대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의위원회는 헌의안의 대체 문단을 그것의 첫 번째 문장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의 첫 낱말을 지움으로 수정했다.]

헌법 32-20 은 현재의 문단 32-20 을 지우고 다음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32-20. 피고 혹은 치리회의 회원이, 예를 들어, 만일 본인이 주장된 범죄 이후 시간의 경과로 공정한 판결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혐의에 대한 고려들을 반대 할 수 있다. 치리회는 주장된 범죄의 엄중함 뿐만 아니라 그 중간 기간에 증거와 기억에 대한 무슨 퇴보가 일어 났는지와 같은 요인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8번 항: 헌법 38-1은 재판 절차 없는 소송건을 위한 고백문에 관한것으로 수정한다.

[참조: 제 48 차 총회가 퍼시픽 노스트 노회에서 상정한 재판 절차 없는 소송건을 위한 고백문에 관한 **헌의안 33** 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헌법 38-1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도록 **수정한다**. (삭제는 중간 줄로, 새 말들은 밑줄을 쳤다.)

38-1. 어떤 사람이 치리회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릴 때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죄의 자백을 다룰 때,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리회가 [재판] 절차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리회 앞에서 자백한 그의 진술은

ITEM 8, continued

by him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must not be taken as a basis of a judgment without process except by his consent. In the event a confession is intended, a full statement of the facts should a written Confession (i.e., a sufficient summary of the facts, the person's specific confession, and any expression or evidence of repentance) must be approved by the accused, and by the court, before the court proceeds to a judgment, and the co-signed document shall be appended to the minutes (regular or executive session). No other information may be presented without written consent from the accused and the court, and this prohibition includes individuals, prosecutors, committees, and commissions. The accused person has the right of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

Rationale: In two SJC cases this year, the presbyteries allowed investigative or judicial commissions to present "reports" in addition to the agreed-upon confession document. The SJC ruled that was contrary to *BCO* 38-1.¹ This revision makes the prohibition clearer, and should help avoid a recurrence of the mistaken procedures in those cases.

In addition, it provides examples of the three most important components to a "Confession" document. This is helpful because the current phrase "full statement of the facts" doesn't explicitly reference the confession of sin or any expression or evidence of repentance. These items should be in the Confession document, which is the lone document on which the court is to base censure.²

Adopted and filed by a Commission of Presbytery on March 20, 2021 Attested by TE Nathan Chambers, Presbytery Interim Stated Clerk

¹ Case 2019-10 *TE Evans v. Arizona*. SJC sustained the complaint on 7/20/20 by a vote of 18-3. Case 2019-04 *TE Williams v. Chesapeake*. SJC sustained the complaint on 8/24/20 by a vote of 13-5. And a third Case, 2020-07 *TE Wilbourne v. Pacific*, is pending.

² For discuss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a Commission *presenting a report* and a Commission "submitting a full record of its proceedings" (*BCO* 15-1), see Dissenting Opinion from RE Donahoe, et al. in Case 2020-04, *Complaint of Marusich v. Central Indiana*. It's found in the SJC's 2021 report to GA, and via link below. https://drive.google.com/file/d/1yL6rOaH8CWvS3mEx9uL6e BGSWgksx1N/view?usp=sharing

8 번 항, 계속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치리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 하기전에, 사실 일체의 진술이 서면 자백 (즉, 사실에 대한 충분한 요약, 그 사람의특정한 자백, 또 무엇이든 회개에 대한 표현 혹은 증거)가 반드시 피고와 치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만 하고, 또 공동으로 서명된 문서가 (정기 혹은임원 회의) 회의록에 첨부되어야만 한다. 피고와 치리회의 서면 동의없이는다른 아무 정보도 제출 될 수 없고, 이 금제는 개인들, 기소자들, 위원회들과 전권위원회들을 포함한다. 피고는 판결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다.

근거: 금년 상법위의 두 소송건들에, 노회들이 합의된 자백 문서에 추가하여 수사 혹은 사법 전권위원회들이 "보고서들"을 제출하는 것을 허락했다. 상법위는 그것이 *헌법* $38-1^1$ 에 위배되었다고 규정했다. 이 재수정이 금제를 더 명확히 하고, 그 소송건들의 잘못된 절차들의 재발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추가로, 그것은 "자백" 문서에 가장 중요한 세 요소들의 실례들을 제공한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재의 문구 "사실 일체의 진술"이 죄의 자백 혹은 무엇이든 회개에 대한 표현 혹은 증거를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항목들이 자백 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치리회가 권징의 근거로 할 단독 문서이다.²

2021 년 3 월 20 에 노회의 한 전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접수되었다. 노회 임시 서기, 강도장로 나단 챔버스에 의해 증명되었다.

¹2019-10 강도장로 에반스 대 아리조나의 소송건. 상법위는 7/20/20 에 18-3 의 투표로 항의를 유지 시켰다.

²⁰¹⁹⁻⁰⁴ 강도장로 윌리암스 대 체사픽의 소송건. 상법위는 8/24/20 에 13-5 의 투표로 항의를 유지시켰다.

또 2020-07 강도장로 윌본 대 퍼시픽의 세번째 소송건은 보류 중이다.

² 어떤 보고서를 발표하는 전권위원회와 "전권위원회의 진행 절차들의 완전한 기록을 제출하는" 전권위원회 (헌법 15-1) 간의 차이점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2020-04 소송건, 치리장로 도나회 등에게서 올려진 반대 의견, *마루식크 대 센트랄 인디에나의 항의*를 보시오. 그것은 총회로 올린 상법위 2021 년 보고서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L6rOaH8CWvS3mEx9uL6e BGSWgksx1N/view?usp=sharing

FOR INFORMATION ONLY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AMENDMENTS ADOPTED BY THE 48th GENERAL ASSEMBLY 2021

ITEM 1. Amend *RAO* 8-4.i (last two sentences) as follows (proposed additions underlined):

RAO 8-4.i

...The deadline for these nominations is the close of the afternoon session of the first <u>full</u> day of the Assembly. The Clerk's office shall issue a supplement to the Assembly's Nominating Committee report during the second full day's business sessions.

[Editorial Note: This amendment was propos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C Recommendation 48).]

ITEM 2. Amend *RAO* **9-3** by deleting the current paragraph and replacing with a new paragraph as follows (strike-through for deletion and underlining for new paragraph):

RAO 9-3. Only two (2) ad interim study committees may be appointed or continued in any given year, (with no committee continuing with undesignated Administrative Committee funding beyond the third year of its inception and no more than two [2] committees existing in any one [1] year), and any additional committees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a two-thirds vote of commissioners, with financing provided from outside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budget.

Proposed replacement paragraph (Overture Committee's amendment to the Overture's proposed revision):

RAO 9-3. Only two (2) ad interim committees may be appointed or continued in any given year, unless additional ones are approved by a two-thirds (2/3) vote of the Assembly.

Funds for ad interim committees will ordinarily be administer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ith contributions to the AC being designated for a particular ad interim committee. Any motion to task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with the funding of an ad interim committee through undesignated giving would require the approval of a two-thirds (2/3) vote of the Assembly as an amendment to the AC budget (per *RAO* 4-11).

Any overture proposing an ad interim committee should ordinarily include a plan for how sufficient, designated funds for the ad interim committee will be raised. Funding should not be the burden primarily of the

정보용

총회운영세칙 2021

제 48 차 총회에 의해 채택된 수정안들

1 번 항. **총운세** 8-4.**ㅈ**(끝의 두 문장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상정된 추가 내용은 밑줄이 있다):

총운세 8-4.ㅈ

… 이 추가 공천의 접수 마감은 총회 첫째 날 <u>종일</u> 오후 회기를 마칠 때까지이다. 총회 서기실은 총회 둘째 날 <u>종일</u> 일정된 회의들이 진행되는 동안 총회 공천 위원회 보고서에 [추가 될] 보충자료를 발행하여야 한다.

[편집자 주: 이 수정안은 행정위원회에 의해 상정되었다 (행정위원회 추천안 48).]

2번 항. 총운세 9-3 은 현재의 문단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새 문단으로 교체하여 수정한다 (삭제는 중간줄을 하고 새 문단은 밑줄을 한다):

총운세 9-3. 한 해의 임시 연구 위원회는 두(2) 개까지만 임명되거나 존속될 수 있으며 (모든 위원회는 발족 후 삼년을 초과하여 행정위원회의 비지정 기금으로 운영될 수 없고, 한(1) 해에 두(2)개 이상의 위원회가 존속할 수 없다), 모든 추가 위원회들은, 행정위원회 예산 밖의 재정으로, 총회 총대 삼분의 이의 찬성 투표로 인준된다.

상정된 교체 문단 (헌의의 상정된 개정안에 헌의위원회의 수정안):

총운세 9-3. 임시 연구 위원회는 총회에서 삼분의 이(2/3)의 인준으로 위원회들이 추가되지 않는 한, 어느 해이든 오직 두(2) 개 까지만 임명되거나 존속될 수 있다.

임시위원회들의 기금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임시위원회를 지정하여 행정위원회로 보낸 기부금들을 가지고 행정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다. 지정하지 않고 보낸 기부금들을 통한 임시위원회의 자금 조달의 과제를 행정위원회에게 맡기기 위한 동의는 어느 것이든 (총운세 4-11 에 따라) 행정위원회 예산에 대한 수정으로 여겨 총회의 삼분의 이(2/3)의 인준을 요구할 것이다.

임시위원회를 상정하는 헌의안은 어느 것이든 일반적으로 그 임시 위원회를 위해 어떻게 충분한, 지정된 기금이 모금될 것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만 한다. 자금 조달이 결코 임시위원회 위원들이나 혹 행위원회의 주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임시위원회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 본 교단의 항존 위원회들과 기관들이 임시위원회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줄 수도 있다. members of the ad interim committee or the AC, but of those requesting the ad interim committee. Permanent Committees and Agencies of the PCA may grant monies toward the funding of an ad interim committee.

[Editorial Note: This amendment as originally worded was proposed by Overture 17 to the 48th GA. The original wording was amend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and the *BCO* amendment as amended was adopted by the Assembly.]

ITEM 3. Amend *RAO* 13-2 by adding one word (underlined) to the first sentence as follows:

RAO 13-2 New business must be presented to the General Assembly before the recess of the afternoon session on the first <u>full</u> day of business, and if it was not first presented as an overture to a Presbytery, the proposal must include an explanation for why it was not. . . .

[Editorial Note: This amendment was proposed by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AC Recommendation 49).]

ITEM 4. Amend *RAO* **15-6.s.2** and **3** (strike-through for deletions; underlining for new wording):

RAO 15-6

- s. Minority Reports.
 - 1) With respect to any recommendation, prior to a recess or adjournment of the Overtures Committee following the adoption of said recommendation, any member of the committee may indicate an intention to file a minority report by giving notice to the chairman.
 - 2) Written notice of intent to file a minority report, signed by at least three teach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ree rul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signed by at least ten percent (10%) of the total number of votes cast on the applicable item by members of the committee of whom at least 4% of such total votes cast must be teaching elders and at least 4% of such total votes cast must be ruling elders, must be delivered to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within one hour of any recess or adjournment following the adoption of said recommendation.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shall inform the chairman of the Overtures Committee of such notice as soon as practicable.
 - 3) The printed minority report, signed by at least three teach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ree ruling elder members of the committee, signed by at least ten percent (10%) of the total number of votes cast on the applicable item by members of the committee of whom at least 4% of such total votes cast must be teaching elders and at least 4% of such total votes cast must be ruling elders, must be presented to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as soon as practicable,

[편집자 주: 원래의 문구로 된 이 수정안은 헌의안 17 에 의해 제 48 차 총회에 상정되었다. 원래 문구는 헌의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고, 수정된 대로 *헌법* 수정안들이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3 번 항. *총운세* 13-2 는 첫 번째 문장에 다음의 (밑줄 친) 한 말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총운세 13-2. 신안건은 반드시 총회 첫째날 <u>종일</u> 오후 회의가 정회 하기 전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일 그것이 먼저 노회에 하나의 헌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 상정안은 반드시 그것이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에…

[편집자 주: 이 수정안은 행정위원회에 의해 상정되었다 (행정위원회 추천안 49).]

4 번 항. *총운세* 15-6. **스.** 2)와 3)은 (삭제는 중간줄로; 새 문구는 밑줄로) **수정한다**:

총운세 15-6

그. 소수 보고서.

- 1) 어떤 추천안에 대해서, 그 추천안이 채택된 다음에 오는 헌의 위원회의 휴식이나 정회에 앞서, 위원회 위원 누구든지 소수 보고서를 접수 시킬 의도가 있음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알릴 수 있다.
- 2) 소수 보고서를 접수 시킬 의도의 서면 통보서는, 적어도 동 위원회의 강도 장로 삼인과 동 위원회의 치리 장로 삼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동 위원회 위원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투표한 총 투표수의 십 퍼센트(10%)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그렇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적어도 사 페센트(4%)는 반드시 강도 장로들이고 그렇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적어도 사 페센트(4%)는 반드시 치리 장로들이어야만 하며, 반드시 언급된 추천안이 채택된 다음에 오는 어떤 휴식이나 정회 한 시간 내에 총회 서기 사무실에 전달되어야 한다. 총회 서기 사무실은 그러한 통보서를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헌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한다.
- 3) 인쇄된 소수 보고서는, 적어도 동 위원회의 강도 장로 삼(3)인과 동 위원회의 최리 장로 삼(3)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u>적어도 동 위원회 위원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투표한 총 투표수의 십 퍼센트(10%)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그렇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적어도 사 페센트(4%)는 반드시 강도 장로들이고 그렇게 투표된 총 투표수의 적어도 사 페센트(4%)는 반드시 치리 장로들이어야만 하며, 반드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동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나,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추천안이십오(15)분 내에 총회 석상에 올려 질 수 없다.</u>

but in no case less than fifteen (15) minutes before the recommendation in question is brought to the floor.

[Editorial Note: This amendment as originally worded was proposed by Overture 9 to the 48th GA. The original wording was amend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and the Overture as amended was adopted by the Assembly.]

<u>ITEM 5.</u> Amend *RAO* 16-4.c.1(1) to add "and their status" after "with their addresses" in reference to the current Presbytery directory (added phrase underlined):

RAO 16-4.c.1

- c. In addition to the minutes themselves, the presbytery shall submit three (3) copies of the following items:
 - 1) A current Directory of Presbytery, including (1) a list of all teaching elders, with their addresses <u>and their status</u>; and of all churches and missions with the address of the church,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lerk of Session, (2) a listing of all officers and committee members of the regular committees of presbytery, and (3) a list identifying all candidates under care, interns, and licentiates of the presbytery with their addresses and their status.

<u>Rationale</u>: If the status is not present, there is no way to determine whether annual reports were received for teaching elders without call or laboring out of bounds.

[Editorial Note: This amendment was proposed by the Committee on Review of Presbytery Records as recommendation V. 20.]

[편집자 주: 원래의 문구로 된 이 수정안은 헌의안 9 에 의해 제 48 차 총회에 상정되었다. 원래 문구는 헌의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고, 헌의안은 수정된 대로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5 번 항. **총운세** 16-4.다.1)(1)은 현재의 노회 주소록에 관련하여 "그들의 주소들" 후에 "과 그들의 신분"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추가된 문구는 밑줄이 있다):

총운세 16-4.ㄷ.1)

- 다. 그 노회록들에 추가해서, 노회는 다음 서류들의 사본 세(3)부를 제출해 한다:
 - 1) 가장 최신판 노회주소록과 함께: (1) 모든 소속 강도장로의 명단과 그들의 주소들<u>과 그들의 신분</u>; 또, 모든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이름과 주소 및 각 당회 서기의 이름과 주소, (2) 노회 임원들의 이름과 노회 산하 정규 위원회의 위원 명단, (3) 언더 케에를 받는 모든 [목회자] 후보생과, 노회 강도사들과 그들의 주소와 신분을 확인해 주는 명단.

<u>근거</u>: 만일 신분이 부재하면, 연간 보고서들이 무임 강도 장도들을 위해 접수된 것인지 아니면 관할 밖의 사역을 위해 접수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편집자 주: 이 수정안은 노회록검열위원회에 의해 추천안 V.20 으로 상정되었다.]

FOR INFORMATION ONLY

OPERATING MANUAL OF THE STANDING JUDICIAL COMMISSION 2021

Item 1. Amend *OMSJC* **4.1** as follows:

4.1 The stated meetings of the Commission shall begin on the first Thursday of February March and on the third Thursday of October in each year.

Rationale: The proposed change allows for additional time for panels to complete their work prior to the Winter (March) stated meeting while still providing adequate time for processing concurring and dissenting opinions from a March meeting prior to the deadline for preparing the *Commissioner Handbook* for General Assembly.

<u>Item 2</u>. Amend *OMSJC* 2.10.d.(3) as shown below.

2.10.

- **d.** A member shall disqualify himself in any proceeding in which the member'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see Section 2.5.b) be questio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3) The member, the member's spouse, or a person within the third degree of relationship to either of them, or the spouse of such a person or a family member (i.e. sibling, parent, child, or spouse, and the spouse of any sibling, parent, or child):
 - i. served as a representative in the matter in controversy;
 - ii. was a witness concerning the matter; or
 - iii. is a member of a court which is party to the case or is a member of a congregation in the bounds of a presbytery party to a case. or was a commissioner to a court which is a party to the case during the time of the proceedings in question.

Rationale: Current wording of OMSJC 2.10.d.(3) is vague, and (iii) is overly and unnecessarily restrictive. Current wording in Chapter 2 was imported from judicial conduct procedures of the South Carolina Supreme Court when OMSJC 2 was drafted. But they are overly restrictive in a PCA court system. For example, current language would require an SJC member to disqualify himself if he has a granddaughter who is a member of a PCA church within a Presbytery against which a complaint has been filed, even though neither she nor her church is involved in the matter in any way.

Automatic disqualification on the basis of family relationships extending to the third degree of relationship is overly restrictive absent other bases, particularly as that would relate to relatives who are members of a congregation in the bounds of a presbytery party to a case, but have no involvement in the case. Even with the proposed revisions, the controlling broad language of OMSJC 2.10.d, "A member shall disqualify himself in any proceeding in which the member's impartiality might reasonably ... be questioned...." affords ample protection for justi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member's judgment.

정보용

2021 상임법사전권위원회 운영 지침

1 번 항. 상법위지침 4.1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1 전권위원회의 정기 회의들은 매년 이월 <u>삼월</u> 첫 목요일과 시월 셋째 목요일에 시작한다.

근거: 상정된 변경은 심사단들이 그들의 일을 겨울 (삼월) 정기 회의 전에 마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하는 반면 여전히 총회를 위해 *총대 핸드북*을 준비하기 위한 마감일 이전에 삼월 회의에서 동의하며 반대하는 의견들을 처리하기 위한 적당한 시간을 제공한다.

2 번 항. 상법위지침 2.10. = . (3)은 아래에 보이는 대로 수정한다.

2.10.

- **ㄹ.** 위원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2.5.ㄴ 항을 보라) 의문시 되는 어떤 진행 절차에도 위원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 (3) 위원, 위원의 배우자, 혹 그 둘 중의 하나에게 제 삼의 관계 내에 있거나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 <u>혹은 가족 (즉, 형제 자매, 부모, 아이,</u> 혹 배우자, 그리고 누가 됐든 형제 자매, 부모, 혹 아이의 배우자):
 - (□) 논쟁 중에 있는 일에 대하여 대표자로 봉사한 적이 있는 자;
 - (ㄴ) 그 일에 대한 증인이었던 자; 또는
 - (C) 소송건의 한 편 당사자인 치리회의 회원이거나 소송건에 있어서 노희 측에 예속되어 있는 희중의 교인인 자, <u>혹은 문제의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소송건의 한 편 당사자인 치리회로 보내졌던 위원.</u>

근거: 현재의 상법위지침 2.10.ㄹ.(3)의 문구는 모호하고, (3)은 과도하게 또 불필요하게 제한적이다. 2 장에 있는 현재의 문구는 상법위지침 2 가 기안되고 있었을 때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법원의 사법적 시행 절차들로부터 수입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미국장로교 치리회 체계에서는 과도하게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만일 한 상법위 위원이 한 노회 안에 있는 교단 교회의 교인인 손녀를 두고 있는데 그 노회를 걸고 상소가 접수되어 왔다고 하면, 비록 그녀나 그녀의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든지 그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문구는 상법위 위원이 자신을 실격 시킬 것을 요구 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근거들의 부재로, 세 번째 수준의 관계까지 확장하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한 자동실격은, 특별히, 그것이 소송건에 대한 노회 측의 관할권 안에 있는 회중의 교인들인, 그러나소송건에 관련하지 않은, 친척들과 관련을 지으려고 할 때, 과도하게 제한적이다. 상정된 개정안들 만으로도, 상법위지침 2.10.ㄹ, "위원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문시 되는 어떤 진행 절차에도 위원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의 광범위한 언어의 통제가 위원의 판단의 적용을 통한 정의에 충분한 보호를 제공한다.